

# 제 안 설 명 서

[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]

# 영 주 시

##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250

제출년월일 : 2002. 4.

제출자 : 영주시장

### 1. 개정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통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, 사회 전반에 주5일 근무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,
-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휴직자의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「주5일제근무」 실시를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함(안 제16조의2제1항)
- 나.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아래 산출방식과 같이 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하도록 함(안 제20조제2항)

$$\cdot \text{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\text{월}-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$

- 다.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2001년 6월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(안 제22조)

### 3. 개정조례(안) : 덧붙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# 5. 참고자료 : 덧붙임

- 가.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시달 공문 (경북도 총무12100-10541, 2002. 3. 26)사본1부.
- 나.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수정시달 업무연락 (도 총무 2002. 4. 3)사본1부.

##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의 제목 “토요일 전일근무제”를 “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”로 한다.

제16조의2제1항중 “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
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 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 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 미만은 철사한다.

$$\textcircled{i} \text{ 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\text{월}-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$

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【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】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의2(토요일 전일근무제) ①주민 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p>	<p>제16조의2(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 ①..... .....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p>
<p>제20조(연가 일수에서의 공제) ①결근 일수, 휴직일수,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0조(연가 일수에서의 공제) 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p> <p>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�数점 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 미만은 철사한다.</p>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【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(안)】

현 행	개 정 안
	<p>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  <u>12월-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</u>  <u>12월</u>  <u>× 당해년도 연가일수</u></p>
② 질병이나 부상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.	③ ..... .....
③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	④ ..... ..... ..... .....
제22조(공가)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 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 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	제22조(공가) ..... ..... ..... .....
1. ~ 4. <생략> 5. <u>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제20조의 규 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</u> 6. ~ 8. <생략>	1. ~ 4. <현행과 같음> 5. <u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</u> 6. ~ 8. <현행과 같음>

관인생략  
\*위대한 경북·함께·희망 300만\*



우702-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-3 /☎ (053)950-2574 /FAX (053)950-2380  
총무과 과장 석현하 사무관 김승태 담당자 전병기

문서번호 총무 12100-10541

시행일자 2002.03.26 ( 1년 )

공개여부 공개

(경유)

받 음 시장·군수

창 조 총무과장

선 령	직원			지 시
		일자	시간	
접 수	번호			결 재
		처리 과	총무과	
담당자		담당자	김승태	공 급
심사자			심사일	

제 목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시달

- 행정자치부 운영 12100-274(2002.3.23)호와 관련입니다.
- 행정기관의 「주5일근무제」시범실시와 육직자의 연가수혜 확대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2002.4.13까지 개정·시행 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 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 개정 보고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.

별 암 :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1부. 끝.

경상북도지사

##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

### 1. 개정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
  -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(토요일휴무제 도입)
-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 호소
  -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 개선 (연가수혜범위 확대)

### 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6조의2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아래산출방식과 같이 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도록 함 (안 제20조제2항)  
$$\frac{12(\text{월})-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$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2001년 6월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(안 제22조)

##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표준안)

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의 제목 “(토요전일근무제)”를 “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”로 한다.

제16조의2제1항중 “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(\*도지사·군수·구청장)이 정한다.

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
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

$$\circ \text{ 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(\text{월})-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$

제2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제16조의2(토요전일근무제)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(*도지사·군수·구청장)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(*도지사·군수·구청장)이 정한다.</p> 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           ①결근일수·휴직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6조의2(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) ①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(*도지사·군수·구청장)이 정한다.</p> 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           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 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p>

## 〈신 설〉

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 
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 
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 
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 
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 
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  
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 
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 
아니하며, 월할 계산에 의하여  
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 
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  
하고,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

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  

$$\frac{12\text{월}-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 
 인한 지참·조퇴 및 외출은  
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 
 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③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
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 
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 
공제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 
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 
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
제22조(공가) ①(생 약)

6.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  
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 
할 때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22조(공가) ①(현행과 같음)

6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  
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 
할 때

〈부 칙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총무연락

수신 : 시군 총무담당

제 목 :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 수정 시달 및 개정 현황 파악

- 시·군정 협의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.
- 도 총무 12100-10541(2002.3.26)호에 의거 시달은  
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증개정조례 표준안 중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 
대하여 물임과 같이 수정·시행하니 동 수정안대로 개정을 추진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- 기 시달한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른 시·군 복무조례  
개정현황을 금일(4.3) 퇴근시까지 다음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제출서식(래시)

시·군	개정현황
포항시	추진 중(4월 말 예정)
경주시	완료(4.2)

붙임 : 수정안 1부, 끌.

도 총무 담당

↑ 승인

## 수정 안내용

개정안	수정안
<p>제16조의2(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 ① 주민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의2(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 ① ----- -----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